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2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6월 7일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6.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사항 반영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련 규정 명시(안 제4조)
 -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안 제5조)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7조)
 -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 정비(안 제11조)
 -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시 승인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안 제13조)
 - 체육시설 위탁계약 해지 규정 정비(안 제16조)
-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9조)
- 공공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정비
 - 안양천 체육시설 현행화(안 제3조 관련 별표 1)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정비(안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
 - 야구장 전용사용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구분
 - 감면대상 유공자 대상자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이용자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감면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대상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신설 체육시설 추가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제6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각각 연령으로 구분하여 별표에 따른 사용료 적용시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당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의 장기간 사용 및 예약 과정의 투명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2019년 10월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교육부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권고하기로 의결하였음.
- 따라서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안 제4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방사항을 명시하고 구민들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주는 것을 규정, 명시하려는 것임.
- 안 제7조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로 의무화하였음.
- 안 제10조는 사용료의 반환 시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근무일 이내에 환불해주도록 정비하였음.
- 안 제11조에 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음. 이는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민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13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이는 시설 입구에 특정 단체의 홍보물이 설치될 경우 지역주민은 사설체육시설로 오인하여 접근하지 못한다는 언론 보도 및 불만민원에 따른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임.
- 다음으로 안 제9조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2개 법령에서 정한 유공자만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6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8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으로 정비함.
- 개정안에 따른 별표1에서는 안양천체육벨트 조성에 따라 신설된 파크골프장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였음.

안 별표3에서는 안양천체육시설 야구장의 전용사용료를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 요금을 구분하였고, 비고란에 유공자의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실외체육시설에 야간조명을 사용 시 사용료를 30% 가산하여 징수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보훈대상자 감면대상에 대한 정비 및 신설된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여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시행에 맞추어 주민들이 체육시설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
----------	-----

발의년월일: 2021년 6월 일

발의자: 최봉희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 신설된 체육시설 추가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조치사항 반영

-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련 규정 명시(안 제4조)
-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안 제5조)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7조)
-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안 제10조)
-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 정비(안 제11조)
-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시 승인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안 제13조)
- 체육시설 위탁계약 해지 규정 정비(안 제16조)

나.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9조)

다. 공공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정비

- 안양천 체육시설 현행화(안 제3조 관련 별표 1)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정비(안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
 - 야구장 전용사용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요금 구분
 - 감면대상 유공자 대상자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협의 : 문화체육과
- 다. 입법예고(2021. 6. 2. ~ 6. 7.)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을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1 안양천 체육시설의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의 주요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3면
--------------------------	---------	---------------------------------

별표 1 안양천 체육시설의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의 주요 시설란 중 “**축구장 1면**”을 “**파크골프장 18홀**”로 한다.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33,932㎡	축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7면 야구장 2면 파크골프장 18홀
---------------------------	---------	--

별표 3 안양천 체육시설의 전 용 사용료의 야구장(성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안양천 체육시설	전 용 사용료	야구장 (성인)	50,000	13,000	10,000	65,000	16,900	13,000	1인 기준 (2시간)

별표 3 비고의 제1호 중 “**50,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를

“50을”로 한다.

별표 3 비고의 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별표 3 비고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한다”를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로 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u>자</u>를 말한다.</p> <p>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u>요금</u>을 말한다.</p> <p>5.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적으로 사용할 때 납부하는 <u>사용료</u>를 말한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자</u>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u>요금</u>을 ---.</p> <p>4. “개인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용료”란 개인사용시 납부하는 <u>요금</u>을 말한다.</p> <p>5. “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u>요금</u>을 말한다.</p> <p>6.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중·<u>고</u>등학생을 말한다.</p>
<p>제4조(사용허가) ① ~ ③ (생략)</p>	<p>제4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p>

<신 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고 그 밖의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제7조(시설의 개방) ①·② (생략)

<신 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음)

④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 4. (현행과 같음)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7조(시설의 개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한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2. ~ 5.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생략)

<신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 ④ (생략)

<신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④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현 행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팅장 1면 농구장 1면 축구장 1면 족구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게이트볼장 7면 족구장 4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33,932㎡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7면 야구장 2면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립 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용 사용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 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3시간)
		월 정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별도 구매			주말 기준(2시간)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2시간)
체육경기		330,000			430,000				

개 정 안

[별표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요 시설
안양천 체육시설	신정교~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문래동)	30,508㎡	인라인스케이팅장 1면 농구장 2면 축구장 3면
	오목교~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1동)	5,300㎡	게이트볼장 7면 족구장 4면
	양평교~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양평2동)	33,932㎡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7면 야구장 2면 파크골프장 18홀
도림천 체육시설	둔치체육시설(도림동)	540㎡	농구장 1면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평일			공휴일(토요일 포함)			비고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대립 운동장	개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용 사용료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개인 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3,000	2,000	1,500	평일 기준(3시간)
		월 정기	44,000	27,500	22,000	일일 입장 별도 구매			주말 기준(2시간)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130,000			170,000			기본 기준(2시간)

		외 행사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개인 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월 정기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25,000			30,000			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안양천 체육시설	전 용 사용료	인조잔디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개 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 용 사용료	야구장 (성인)	50,000			65,000			1팀 기준 (2시간 30분)
		야구장 (유소년)	10,000			13,000			
비고	<p>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결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p> <p>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 로 한다.</p> <p>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 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p> <p>5. 사용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p> <p>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p>								

		체육경기 외 행사	330,000						430,000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개인 사용료	일일입장	3,000	2,000	1,500	4,000	2,500	2,000	실내/실외 이용			
		월 정기	성인 40,000, 청소년 30,000, 어린이 25,000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	25,000			30,000			1루트 기준(2시간) 개인사용료 별도			
안양천 체육시설	전 용 사용료	인조잔디 축구장	40,000			52,000			1팀 기준(2시간)			
	개 인 사용료	테니스장	8,000			10,400			1면 기준(2시간)			
	전 용 사용료	야구장 (성인)	50,000	13,000	10,000	65,000	16,900	13,000	1팀 기준 (2시간 30분)			
		야구장 (유소년)	10,000			13,000						
비고	<p>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2.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결합시 제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되, 잔여분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p> <p>3. 대림운동장 운영시간은 11월~2월은 07:00~18:00, 3월~10월은 06:00~19:00 까지 로 한다.</p> <p>4.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전용사용료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나. 영등포구체육회 소속 종목별 협회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 다.(단, 협회별 연 1회로 한정한다)</p> <p>5. 사용료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령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p> <p>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한다.(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p> <p>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p>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

라.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6.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한해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월정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각각 감면한다.

7.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한다.

8. 실외체육시설의 야간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 기본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9.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 할 수 있다.